정 책 22－21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 모니터링 연구

[요약본]

2022. 12.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한국장애인개발원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본 연구보고서의 연구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연 구 진

연 구 책 임 : 조윤화(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본부 자립지원연구팀장)

공동연구원 : 이선우(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상용(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정승원(우석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김재영(국민연금관리공단 부연구위원)
이혜경(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본부 연구개발팀 부연구위원)
최승훈(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본부 자립지원연구팀 부연구위원)

연구보조원 : 주 란(전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본부 자립지원연구팀 연구원)
김미령(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본부 자립지원연구팀 연구원)
이윤경(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본부 자립지원연구팀 연구원)
박시은(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본부 자립지원연구팀 연구원)

현장전문가 자문진

송지연(밀알복지관 현장전문가)
이정주(엠마우스복지관 현장전문가)
안진권(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현장전문가)
오세형(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팀장)
피재성(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현장전문가)
구서희(기쁜우리복지관 현장전문가)
김혜경(영도구장애인복지관 팀장)
이기중(인천광역시서구장애인종합복지관 팀장)
남석우(행복한우리복지관 팀장)
이민정(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평가센터 주임)
홍선진(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지원센터 팀장)
이은정(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지원부서장)

국민연금공단 자문진

송윤환(국민연금공단 대리)
이종민(국민연금공단 남동연수지사 평가사)
강수정(국민연금공단 부평계양지사 평가사)
박종태(국민연금공단 서대전지사 평가사)
박다혜(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 평가사)
박종완(국민연금공단 성동광진지사 평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문진

김은찬(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선임평가사)
김범준(한국장애인고용공단 평가사)
권희정(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팀장)
이미정(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 선임평가사)
조승수(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 팀장)
김재동(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 평가사)
박수정(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 팀장)
배미희(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역본부 전임평가사)
윤희정(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 전임평가사)
한은영(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부지사 전임평가사)
이은택(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전임평가사)

자문진

이기학(더메이크 사회적협동조합 공동대표)
김웅(더메이크 사회적협동조합 시흥지부장)
오욱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연구위원)
강동욱(한국복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정원(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복지팀 주임)

목 차

Ⅰ. 들어가며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2. 연구방법 ····· 6

Ⅱ.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 개요 ····· 7

1. 시범사업 개요 ····· 7

Ⅲ.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도구 개요 및 내용 ····· 8

1 조사표 개발 개요 ····· 8
2 조사표 구성 및 내용 ····· 9
3. 조사 절차 및 방식 ····· 11

Ⅳ. 양적조사 결과 ····· 15

1. 총괄 ····· 15
2. 분석결과 ····· 15

Ⅴ. 질적조사 결과 ····· 16

1. 총괄 ····· 16
2. 분석결과 ····· 17

Ⅵ. 결론 ····· 20

붙임 1 (가칭)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표 개괄 ····· 24

붙임 2 구직단념자 현황 ····· 26

표목차

〈표 1〉 조사내용 ····· 6
〈표 2〉 조사개요 ····· 7
〈표 3〉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문항 영역 및 수(최종안) ····· 9
〈표 4〉 소득활동종합조사 참여자 수 ····· 15
〈표 5〉 FGI 대상자(현장전문가) ····· 16
〈표 6〉 FGI 대상자 (장애인 당사자) ····· 16
〈표 7〉 현장전문가 FGI 주제 분석 결과 ····· 17
〈표 8〉 장애인 당사자 FGI 주제 분석 결과 ····· 18
〈표 9〉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 의미 ····· 20
〈표 10〉 시범사업 성과 ····· 22
〈표 11〉 시범사업 한계점 ····· 22

그림목차

[그림 1] 경제활동인구비율 ····· 2
[그림 2] 장애인가구 비목별 소득수준 ····· 3
[그림 3] 기초영역 체크리스트 문항 ····· 11
[그림 4] 소득활동종합조사 판정 절차 흐름도 ····· 13
[그림 5] 소득활동종합조사 역할 ····· 20
[그림 6] 소득활동종합조사 의미 ····· 21

Ⅰ 들어가며

1 연구배경 및 목적

□ 추진 근거

○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에 따른 소득·고용지원 방안 수립을 위해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22년)** 실시

- 중증장애인의 근로욕구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다 정교화된 소득·고용연계 방안 검토

>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2018-2022)의 "3-2 소득보장과 고용지원서비스 연계강화" 에 따른 소득보장 대상 선정방안 개선 및 전달체계 구축 부문
> - 근로능력 등을 고려하여 소득보장급여, 고용지원 등을 결정하는 소득고용지원 기준 검토 및 시범운영('20-21)
> - 근로능력이 인정되는 중증장애인에게는 고용서비스 지원이 확대되도록 관련 부처와 연계 강화
> ·근로능력이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근로상담 연계

□ 추진 배경 및 목적

○ **(현황) 비경제활동 중증장애인**은 취업 욕구에 비해 **생산성 중심의 노동시장 구조**와 **사회적 편견, 정보 부족** 등으로 **일자리 및 훈련 등의 참여가 제한되어,** 비경제활동인구에 지속적으로 머무를 가능성이 높음

- **(중증장애인 10명중 7.4명 비경활인구) 2021년 중증장애인 중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74.0%**, 2020년 76.4% 지속[1)]

  * 15세 이상 인구 기준임

- 비경제활동 중증장애인은 취업욕구가 있으나 **장애와 노동시장 사유로 인하여 구직을 단념 할 비율이 높음**

  · **비경제활동 중증장애인** 중 **취업가능성이 있는 장애인**은 25,072명(비경활 중증장애인의 6.4%)으로, 이들 중 **구직단념자***는 **총** 14,855명(취업가능성이 있는 장애인 중 59.2%)로 **매우 높은 수준**[2)3)]

1) 경증장애인 중 비경제활동인구 55%(2020년), 56.3%((2021년)/전체인구 중 비경활인구 37%(2020년), 36.3%(2021년)
2) 비경제활동 중증장애인 중 취업욕구가 있는 장애인은 27,572명 중 1년 내 구직활동 경험이 있었던 자는 1,510명 수준으로 매우 적음*(18-64세 기준임)/2020년 기준임/비경활중증장애인 수 394,088명, 비경활경증장애인수 213234명임.

* 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자로 구직단념자는 향후 노동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자들을 의미함, 분석단위는 18-65세 미만 기준임

※ 비경제활동 중증장애인 중 취업욕구가 있는 자들의 **비구직 사유: ①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고용주가 채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2,184명, 40.5%), ②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2,014명, 37.3%), ③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532명, 9.9%) 순**임(2020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재분석)

- **구직단념자는 잠재적 노동시장 유입대상자**로서 이들을 구직활동으로 이행하도록 유인하는 **디딤 제도 필요**

  • 특히 비경활 중증장애인 구직단념자 중 **근로 가능한 자**는 총 **12,770**명으로 **이들이 최소한의 정책대상자**로 볼 수 있음

* 일반적인 근로가 가능한 자는 3501명(23.6%), 단시간 또는 단순한 근로가 가능한 자는 9269명(62.4%), 18-65세 미만 기준임



[그림 1] 경제활동인구비율

○ **(중증장애인가구 노동소득 감소)** 2020년 **중증장애인가구 및 중증장애인의 전체 소득**은 2017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특히 **공적이전소득 증가 폭은 노동소득 감소폭을 상쇄시킬 만큼 크지 않음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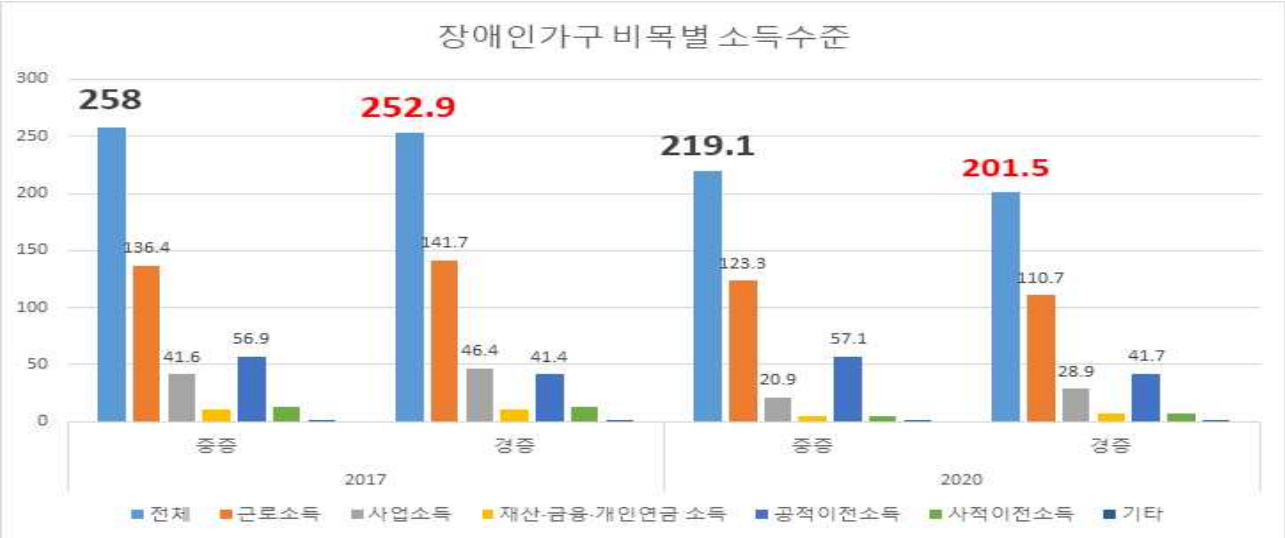
취업가능성은 지난주 취업희망을 하고, 지난주 취업 가능성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함.

3) ILO 정의에 따르면, 구직단념자란 '일을 원하고(want a job), 현재 일할 수 있지만(currently available for work), 구직결과 일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포기한 자'를 지칭하며, 주로 여성, 청소년, 그리고 중고령층과 같은 이차적 노동력 계층에서 발견되기 쉬움(강순희, 1999 재인용). 구직단념자는 실업자처럼 활용되지 못한 노동자원을 나타내고 있어 미래의 실업자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필요함

4) 동 결과는 경증장애인이 더 심각함. 즉 020년 경증장애인가구의 소득은 201.5만원으로 2017년 252.9만원에 비해 약 51.4만원이 낮아짐. 이는 중증장애인 평균소득 219.1만원보다 낮으며, 2017년에 비해 노동소득의 감소가 경증장애인가구에서 두드러진 결과이며, 공적이전소득의 증가 수준은 중증장애인 가구에서만 나타나고 있어, 상대적으로 경증장애인가우가 열악(2020 장애인실태조사)

- 2020년 중증장애인가구 월평균 소득수준은 219만원으로 2017년(258만원)에 비해 38.9만원 감소, 노동소득 144.2만원으로 2017년 대비 33.8만원 감소(178만원)

- 한편 2020년 공적이전소득은 57.1만원으로 0.2만원 증가(2017, 56.9만원)



[그림 2] 장애인가구 비목별 소득수준

○ **(상대적으로 높은 중증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지출)** **2020년 중증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지출은 186만**원, 경증장애인 **174만원**으로 중증장애인가구 지출이 높고*, 흑자액(가구소득-가구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을 가능성이 높음**

* 상대적으로 높은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 등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예상됨(20만원, 11만원)

** 상대적으로 중증장애인가구의 흑자액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2020년은 경증장애인가구의 노동소득감소로 인해 흑자액이 상대적으로 중증장애인이 높음(중증장애인가구 33.1만원, 경증장애인 27.5만원

- 현금성 공적급여 확대 및 근로소득 창출을 위한 적극적 소득 및 노동시장 제도 확대 등에 따른 소득의 증대, 사회서비스 증가 등에 따른 월평균 지출의 감소가 필요하나,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는데 한계**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소득창출을 유도하여 소득 을 증가시키는 등 소득 및 고용**정책의 확대가 요구됨5)

○ **(문제점)** 현재 **고용노동부**가 장애인구의 취업 연계 및 훈련 지원 등 **고용서비스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음

5) OECD(2010)에 따르면, 장애인 정책은 현금성 지원 정책에서 직업 및 일자리를 통한 통합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음.

- **훈련수당을 고려한다면,** 고용부의 **지원고용사업체에 훈련**하는 것이 가처분소득 증가를 위해서는 적절하나*, 3주~6**개월 이상 훈련이 가능한자가 주 대상자로서,** 이 외 **최중증장애인**은 탈락 및 비경활인구로 남을 위험이 높음

  * 현장중심 직업훈련 훈련수당의 경우 월10만원, 지원고용은 급여수준은 월 10만원으로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은 월36만원(20일 기준[6])

-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사업과 보건복지부 사업의 연계 분절**로 고용노동부 사업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또는 그 역의 상황에서도 **적절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

  • **지원고용 등에 탈락될 경우 복지부 또는 훈련 등에 미연계될 가능성으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머물 수 있음

  • **보건복지부 공공장애인일자리**의 경우에도 탈락 대상자들에 대한 고용노동부 및 관련 복지관련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

○ 특히 **비경제활동 중증장애인**은 취업 및 훈련 등의 정보를 얻는 방법 자체를 모를 뿐 아니라, **근로능력 제약, 사회적 편견 등으로** 자발적 이행을 전제하기 힘듦

- 비경제활동 중증장애인의 특성상 자발적으로 근로소득 및 훈련, 취업의 이행에는 매우 소극적임

  * 본 질적연구에 따르면, 정보를 찾거나 얻는 방법 자체를 모르고 있으며, 소득활동종합조사를 통해 취업의 길로 도약하게 되었다는 의견.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찾는데까지의 시간을 절약하였다고 의견 제시

○ **'공급자 중심의 고용서비스 제공'**으로는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인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하기에는 역 부족**

- 공급자 중심의 고용서비스는 자발적 이행과 소극적 발굴, 사후 직업사례관리의 약화 등을 특징

- 직업을 유지하고, 훈련 이후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촘촘한 직업사례관리 체계 부족

○ 따라서 **공급자 중심 및 분절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내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자발적 고용서비스 이용을 통한 사회참여와 소득창출에는 한계**가 있음

---

6) 고용부 지원고용 사업체의 경우, 월386,800(20일 기준, 일 19,340)이 지원되고 있으며(2021년 기준),

- 또한 중증장애인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소득 창출을 위한 적극적 제도 마련 및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제도 확대와 현금성의 공적지원 확충, 사회서비스 증가 등에 따른 월평균 지출의 감소가 필요*

- 우선적으로 지역사회 내 취업욕구가 있는 **비경활 중증장애인의 적극적 발굴과 당사자 중심의 훈련 및 취업 등을 지원을 일컫는 '권리 기반 고용서비스 지원'을 토대로 사회참여와 소득창출을 활성화시킬 필요**

○ (목적) 본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내 **비경활 중증장애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소득활동수준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적절한 **근로상담, 훈련 및 취업 등을 연계함으로써, 근로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 이는 중증장애인의 소득활동, 즉 취업 등에 대한 참여를 높여 경제적 생활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
- 또한 고용부와 복지부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중증장애인의 소득활동수준 결과 등에 따라 두 기관 간 긴밀한 연계 체계를 마련하여 분절된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

2 연구방법

○ 양적연구

- 소득활동종합조사, 소득활동종합조사 모니터링 조사, 전문가 조사

〈표 1〉 조사내용

구분	분석내용	
소득활동종합조사	소득활동종합조사	본조사
		추가조사
소득활동종합조사 모니터링 조사	소득활동종합조사 만족도 조사	
	서비스 연계 적절성 조사	
	재연계 조사	
	세부 서비스 연계 결과 조사	본조사
		추가조사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	
전문가 조사	전문가 조사	

○ 질적연구

- 당사자,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소득활동종합조사 의미 및 개선방향 도출

II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개요)** 중증장애인(1,000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통해 소득활동종합조사* 실시 후 직업재활·훈련 및 민간일자리 등 고용연계

* 소득활동종합조사 : ▲기능적(신체·감각 등) ▲사회적(근로경험 등) ▲환경적 요인(지역 일자리 환경 등)이 종합 고려된 근로욕구·환경 등에 대한 판정도구

- **(조사결과) ①상대적으로 근로욕구 등이 높은 경우 → 고용부**(2/3 비율)

  : 장애인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등 연계하여 민간일자리 취업지원 연계

  : 고용부 연계 후 적합한 근무지가 부재한 경우 복지부 사업으로 재연계

  ②상대적으로 근로욕구 등이 낮은 경우 → 복지부(1/3 비율)

  : 직업재활·훈련 등을 연계하여 직무경험·취업역량 등 제고(훈련수당 10만원)

○ **(수행기관)**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활동종합조사 실시

* 활동 및 이동지원 등 서비스를 위해 기존에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장애인인턴제 등 고용부 사업 연계 및 **직업재활수행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해 현장중심직업훈련 등 복지부 사업 연계

○ **(실시지역)** 광역단위로 서울특별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

* 서울특별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

○ **(조사 기간 및 방법) 4월 ~ 11월 30일(1~2차로 수행)**

〈표 2〉 조사개요

내용		본조사(1차)	추가조가(2차)
수행기관		25개소	53개소 (직업재활시설 28개소 포함)
모집	기간	~6.30.	~11.30.
	접수방법	지자체를 통한 접수	사업수행기관을 통한 접수
소득활동 종합조사	기간	~8.31.	~11.30.
	조사원	국민연금공단 조사자 및 현장전문가(2인 1조)	현장전문가 2인(2인 1조)
	조사장소	방문조사	방문조사 및 수행기관 내방조사
현장중심 직업훈련	사업체	직업재활시설 훈련인원 훈련 목표 실인원의 30% 이내 허용	제한 없음

III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도구 개요

1 조사표 개발 개요

○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는 중증장애인의 소득활동(취업)에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

- 기능적 측면에 치우쳐 있던 근로능력도구를 ICF 장애개념에 근거하여 기능적 측면, 개인 및 환경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
-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직접 고용서비스 지원 전에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를 통해 신체 및 정서 기능적 측면, 개인 및 지역사회 환경 등 중증장애인의 소득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스크리닝 하여, 소득활동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맞춤형 고용서비스 기관으로 연계하기 위해 개발
- 즉 중증장애인을 고용노동부 취업 연계 대상자와 보건복지부 취업 연계 대상자로 구분할 수 있도록 마련함
- 직접적인 고용서비스 지원 전에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를 통해 (스크리닝)에서 두 집단으로 구분함으로써, 고용서비스를 접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소시켜, 당사자에게 적합한 취업 및 훈련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근로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2 조사표 구성 및 내용

□ (가칭)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구성 방향

○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욕구, 소득활동능력, 일자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득활동종합수준을 조사하여, 중증장애인의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및 소득활동종합수준 파악을 위한 근거 제공**

□ 소득활동종합조사 구성 및 내용

○ 대 영역(총 2개): 기초조사영역, 심층조사영역

○ 중 영역(총 4개): 기본영역, 기초영역, 기능적 영역, 개인 및 환경적 영역

○ 세부영역(총 7개): 총 7개 영역, 84문항으로 구성

〈표 3〉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문항 영역 및 수(최종안)

대영역	중영역	세부영역	주요 내용	문항 수
기초조사	기본영역	기본사항 (개인사항)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락처 등의 기본적인 개인사항 전반을 포함	22문항
	기초영역	기초 일상생활 영역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기초적인 근로능력을 포함하여, 일상생활영역에서의 제한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문항	5문항
		소득활동욕구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소득활동욕구를 확인하기 위한 문항	1문항
심층조사	기능적 영역	신체·감각 영역	근로활동 시 필요한 기초적인 신체·감각 영역	9문항
		인지·정서 영역	근로활동 시 필요한 기초적인 인지·정서 영역	9문항
	개인 및 환경적 영역	개인 및 환경 영역	• 개인 영역: 근로활동 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적인 요인(근로경험, 취업의지, 입퇴원 수준, 약물부작용, 나이 등) • 환경적 영역: 지역사회 내 일자리(4시간 이상 민간일자리) 충분성, 지역사회 내 고용서비스 충분성, 대중교통 및 이동수단의 여건, 근로관련 인적 및 물적 지원 정도 등임	34문항
		종합 영역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기본사항, 기초조사 영역, 신체·감각 영역, 인지·정서 영역, 개인 및 환경 영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문항	4문항
합계				84문항

1) 기초조사영역

(1) 기본영역

- 기본사항: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락처

(2) 기초영역

- 기초 일상생활영역: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기초적인 근로능력 판단 5개 문항
- 소득활동욕구영역: 당사자의 소득활동욕구를 확인하기 위한 문항 2개 문항

2) 심층조사영역

(1) 기능적 영역

- 신체·감각 영역: 근로활동 시 필요한 기초적인 신체·감각 영역 9문항
- 인지·정서 영역: 근로활동 시 필요한 기초적인 인지·정서 영역 9문항

(2) 개인 및 환경 영역

- 개인 및 환경적 영역: 근로활동 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요인(근로경험, 취업의지 등) 및 주변 환경적인 요인 파악을 위한 36문항
- 종합 영역: 중증장애인 기본사항, 기능적 요인(신체·감각 능력, 인지·정서 능력), 개인 및 환경요인들을 고려하여 소득활동종합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4문항

* 심층조사는 기초조사를 모두 포함하여 조사함

3 조사 절차 및 방식

□ **(조사절차) ①기초조사와 ②심층조사**를 통해 소득활동종합수준을 판정

① **(1단계 - 기초조사)**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기본사항을 포함하여 **'기초 일상생활영역'** 조사와 **'소득활동 욕구 여부**(취업 및 훈련 희망 여부)'를 조사, 1차 조사 결과에 따라 **심층조사 실시여부 확정**

- **(심층조사 제외)** 기초조사 결과, '기초 일상생활능력이 낮거나, 소득활동욕구가 없는 집단'의 경우, 시범사업 정보 제공 및 필요시 주민센터 연계

- **(심층조사 실시)** 기초조사 결과, '기초 일상생활능력이 높지만, 소득활동욕구가 있거나 또는 없음'의 경우,

※ 단, 소득활동욕구가 없고, 심층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 결정에 따르며 시범사업 정보 제공

< 참고: 기초영역 체크리스트 문항 >

[기초 일상생활 영역]
1. 장애인 당사자는 일상생활 시 **호흡기 보조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2. 장애인 당사자는 **배변 및 배뇨 시 타인의 도움(흡수용 패드 사용 포함)**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단, 매일,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한정함)
3. 장애인 당사자는 **음식물 섭취 시 타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예. 삽관, 유동식 제조 필요 등)
4. 장애인 당사자는 **누운 상태에서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렵습니까? (예. 와상장애 등)
5. 장애인 당사자는 **도전적 행동과 공격적 행동의 빈도가 잦거나 정도가 지나쳐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예. 약물 복용하더라도 행동 조절이 어려워 일상생활이 힘든 경우 등)

[소득활동욕구 영역]
1. 장애인 당사자는 취업 및 훈련(교육 포함) 중 무엇을 더 원합니까?
   ① 취업 ② 취업 후 훈련 ③ 훈련만 원함 ④ 모두 희망하지 않음
2. 장애인 당사자는 취업 및 훈련을 **모두 희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림 3] 기초영역 체크리스트 문항

② **(2단계 - 심층조사)** '개인 기능 중심'의 기존 조사체계에서 벗어나, **기능적 영역**(신체·감각, 인지·정서 영역) 및 **개인·환경적 요인**(근로경험 및 노동시장 일자리 충분성 등)**을 포괄하여 소득활동종합수준 조사**

- 1차 **기초조사에서 심층조사로 판정된 자를 대상**으로, 신체·감각 영역과 인지·정서 영역의 **기능적 조사, 환경적 조사** 등 총괄적으로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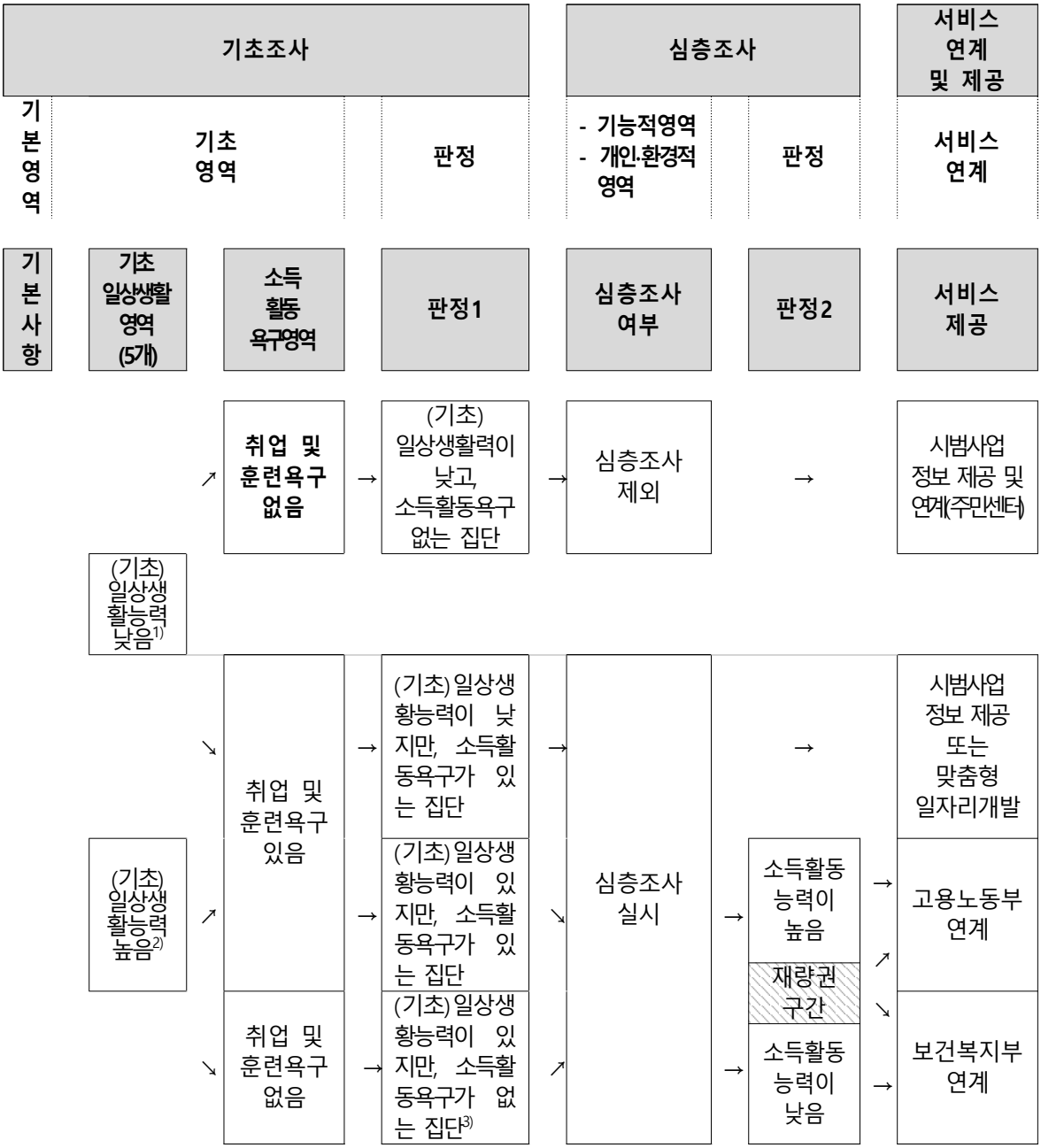
- 소득활동종합수준에 따른 '신체 및 감각, 인지 및 정서영역 총점'에 따라, **㉮소득활동능력이 높은 집단(고용노동부 연계)'**과 **'㉯소득활동능력이 낮은 집단(보건복지부 연계)'**으로 판단(아래 참고)

※ **(소득활동종합수준)** 중증장애인 대상(1,506명) 조사를 토대로, 재량권 영역 10%, 고용노동부 연계 65%, 보건복지부 연계 25%로 구분하여 도출함

- (예시1) 신체·감각 영역 점수가 30점이고 인지·정서 영역의 점수가 20점일 경우, 보건복지부 연계
- (예시2) 신체·감각 영역 점수가 34점이고 인지·정서 영역의 점수가 28점일 경우, 재량권 영역으로 당사자의 욕구와 개인 및 환경 조사를 고려하여 판정
- (예시3) 신체·감각 영역 점수가 36이고 인지·정서 영역의 점수가 35점일 경우, 고용노동부 연계

③ **(3단계 - 심층조사 내 재량권 영역)** 심층조사 결과, **재량권 영역**(약 10% 수준)에 포함되는 경우, **장애인 당사자 욕구**와 당사자의 지역사회 **노동시장 환경 및 직업경험 내용에 기반하여 ㉮~㉯집단으로 이동 가능하도록 설계**

< 참고: 소득활동종합조사 판정 절차 흐름도 >



주: 1) 기초조사 문항(5문항)에 1개 이상 '해당'으로 응답한 경우
2) 기초조사 문항(5문항)에 모두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경우
3) 심층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 결정에 따르며 시범사업 정보 제공

[그림 4] 소득활동종합조사 판정 절차 흐름도

□ 조사방식

(1차)

○ 다학제 팀 구성: 국민연금공단 조사원 1인(신체·감각 및 인지·정서 영역 등), 현장전문가 1인(직업, 노동시장 환경 영역 등)이 함께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조사장소는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예. 거주지 방문)를 우선으로 하며, 현장전문가와 일정을 맞추어 2인이 함께 방문함

○ 평가 시 2인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되, 국민연금공단 조사원 1인은 기본사항, 기초평가, 심층평가 중 신체·감각 및 인지·정서 영역을 주로 평가하고, 현장전문가 1인은 심층평가 중 개인 및 환경 영역, 종합영역을 평가함

○ 중증장애인 당사자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지원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조사에 반영할 수 있음

(2차)

○ 조사방식에 있어 노동시장의 현장전문가 2인 1조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1차는 방문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나, 2차는 내방도 허용하였음

Ⅳ 양적조사 결과

1 총괄

○ 조사요약: 참여자 총 1,095명

- 본 조사(1차): 521명(2022년 3~8월)
- 추가조사(2차): 574명(2022년 10~12월)

〈표 4〉 소득활동종합조사 참여자 수

(단위: 명, %)

구 분		본 조사	추가조사	전체
전 체		521(100)	574(100)	1095(100)
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연계	80(15.3)	333(58.0)	413(37.7)
	고용노동부 연계	322(61.8)	222(38.7)	544(49.7)
	중도이탈	104(20.0)	6(1.0)	110(10.0)
	시범사업 참여불가	15(2.9)	13(2.3)	28(2.6)

2 분석결과

[본 보고서 참조]

Ⅴ 질적조사 결과

1 총괄

○ 현장전문가

- 14인(현장중심일자리 7인, 장애인고용공단 7인)

○ 당사자

- 총 21인: 이탈(7인), 대기(6인), 취업(5인), 훈련(3인) 총 21인

〈표 5〉 FGI 대상자(현장전문가)

구분	지역	소속 및 직함
현장중심일자리 담당자	서울	기쁜우리복지관
	대전	밀알복지관
	광주	엠마우스복지관
	대구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인천	인천광역시서구장애인종합복지관
	부산	영도구장애인복지관
	대전	행복한우리복지관
장애인고용공단 담당자	서울	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서울	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
	부산	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
	대구	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
	광주	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
	대전	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역본부
	울산	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

〈표 6〉 FGI 대상자(장애인 당사자)

구분		장애유형	연령대
고용	이탈	지체	50대
		신장	50대
		지체	30대
		뇌병변	50대
	대기	지체	60대
		뇌병변	40대
		지체	30대
		심장	20대
		청각	20대
	취업	지적	20대
		지체	20대
		뇌병변	30대
		신장	40대
		시각	20대
	훈련	청각	20대
복지	이탈	정신	30대
		지적	50대
		신장	40대
	대기	정신	20대
	훈련	뇌병변	40대
		지적	30대

2 분석결과

○ 현장전문가

〈표 7〉 현장전문가 FGI 주제 분석 결과

구분	주제	세부범주	하위범주
장애인고용공단	신규 대상자 확대와 다양한 장애유형 유입	적극적 발굴에 따른 신규대상자 확대	- 신규 대상자의 발굴 의미(신규63명/기존167명)
		적극적 발굴에 따른 기존 대상자 재발굴	- 기존 DB에 등록되어 있는 자 재발굴, 서비스 중복 등 서비스에서 탈락되거나 연락두절이 되었던 자들이 다시 대상자로 포함
		다양한 장애유형 유입에 따른 새로움과 기관 발굴	- 내부장애, 호흡기 장애 등 기존 지체 및 발달이 아닌 대상자들이 대상자로 들어와 관련 서비스 및 기관 발굴
	시범사업 주체와 사업진행자간 차이에 따른 고통	실사 결과 공유 부족에 따른 공단 조사 진행 어려움	- 심사결과 공유부족으로 재판정에 따른 당사자들의 불만
		최종 책임 전가에 따른 당사자 불만처리	- 사업 수행 주체는 보건복지부이나, 최종 진행사항과 내용에 대한 불만은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함으로 인한 힘듦
	제도의 한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기준으로 이탈 사례 발생	- 사전에 고용노동부의 주요 사업들에 참여할 경우, 국기초에 탈락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줄 필요
		서비스 이용 및 중복 등으로 탈락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 또는 더 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대상자
보건복지부	최중증 중심의 서비스 지원	최중증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 지원고용, 보호작업장 등의 수준 보다 좀 더 어려운 대상자 유입
	제도에 의한 이탈	낮은 급여수준으로 참여자 이탈	- 보건복지부 급여와 고용노동부 지원고용급여의 차이에 따라 다시 재연계되는 사례 발생
공통	적극적 지자체 개입에 따른 구직단념 사각지대 발굴	지자체의 적극적 발굴 결과가 성과	- 지자체의 적극적 개입에 따른 발굴의 영향이 신규발굴에 가장 큰 도움이 됨
		구직단념 비경활 중증장애인의 유입-사각지대 발굴	- 취업 정보, 복지관 등의 자원 등에 대한 무지의 장애인의 취업에 대한 욕구 발견 및 발굴
	연계 소통 확대	보건복지부과 고용노동부와의 연계를 통한 소통 확대	- 두 기관 간 연계 실시에 의해 당사자의 욕구 변화에 민첩하게 반영
	재량권 부족과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아쉬움	부족한 재량권 확대 필요	- 개인 및 환경적 맥락에 의한 기준에 따른 재량권 필요 - 신체 기능은 나쁘지만 정서 및 인지가 좋을 경우에 대한 재량권 부분 필요
		새로운 서비스가 없음	- 새로운 지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새로운 것이 없다는 당사자의 의견들
		새로운 서비스들 필요	- 현장중심일자리와 고용부 일자리 외에 다양한 서비스들의 집합이 필요함
	제도의 한계	훈련 및 취업을 저해하는 제도들의 유연성 필요	- 소득활동종합조사 등에 참여한 자들에 대한 유인책 필요(소득 증가 시에도 수급권 유지하는 방안)

- 주제분석 결과

  · 지자체의 적극적 발굴에 의한 구직단념자 신규 발굴 및 수면 아래에 있었던 대상자 재발굴

  · 고용공단 구직 등록이 된 자들로 서비스를 기다리는 중이거나, 연결이

안되었거나, 더 이상 사업참여가 어려운 대상자등 중복 또는 재 유입

· 재연계 사례 등을 통한 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연계를 통한 소통

· 시범사업 주체와 사업진행주체(고용노동부) 차이에 따른 책임성 소지 문제

○ 당사자

〈표 8〉 FGI 주제 분석

주제	상위범주	하위범주
수요자 중심의 사업구성	장애인 고용시장 장벽을 낮춤	직접 홍보와 노출 결과 취업 등 도전이 용이
		가정방문조사 형식의 편리함
		고용연계서비스 과정의 편리성
	지역조사원 파견을 통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짐
		조사원 친절성
	대상자 맞춤 서비스 제공	소득과 근무시간에 만족
		본인에게 적절한 업무에 연계됨
사회참여 촉진	사회참여의 교두보 마련	본 사업을 통해 생애최초근로를 경험
		본 사업을 통해 경력단절을 해결
역량강화 및 삶의 질 개선	역량강화	본 사업을 참여 이후 취업 및 훈련욕구 향상
	삶의 질 개선	취업 이후 성격의 긍정적인변화
		경제활동으로 소득수준 향상
장애인 일자리 사각지대 해소	신규 발굴	생애 최초 근로경험
	대상자 정보제공 방식의 직접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접근
전달체계 미흡	기관 간 소통의 부재	정보전달 방식 개선
		기관 간의 연계가 부족함
	정보접근의 어려움	정보접근이 용이하지 않음
		취업 관련 정보 부족
		조사과정에서의 불편함
	조사원 교육 부족	대응이 미숙함
		기관방문이 정보획득에 더 유용함
연계 프로그램 부족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	소득이 적음
		계약직인 고용형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다양화된 일자리 연계 필요성	다양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필요 - 창업 등
		장애인의 경쟁력 부족
		참여자 개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연계
		본인과 맞지 않는 업무에 연계됨
조사도구 개선	개별 특성에 맞는 문항 개발	참여자 개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연계
		본인과 맞지 않는 업무에 연계됨
		개별 당사자의 특성에 맞는 문항이 아님

· 소득활동종합조사 - 구직단념자들을 구직활동으로 옮기도록 하는 교두보 역할
· 자발적인 취업 정보 취득 및 서비스 이용까지 시간, 판단 등 시행착오를 감소시킴
· 직접적 지원으로 공급자 중심, 시혜적 지원 -> 취업과 일에 대한 이용자 권리 강화[7)]
· 계속된 탈락과 편견 등으로 낙심, 포기, 훈련으로만 돌리며 수당지원(안정적 취업이 필요하나, 돌아오는 것은 안된다는 것)
· 계속 취업에서의 탈락 등으로 소득활동종합조사를 기대하였으나, 새로운 것이 없어 아쉬움
· 생계를 위해 소득활동종합조사 지원
· 의욕, 편의시설의 문제로 시설장에 의한 탈락, 나이 등 노동시장에서의 구인의 기준과의 상충 - 창업, 집에서 하고 싶은 일

[본 보고서 참조]

7) 구직활동을 위해 장애인고용공단 방문하는 것 자체의 거부감 -> 공급자 위주의 방식으로 인식

Ⅵ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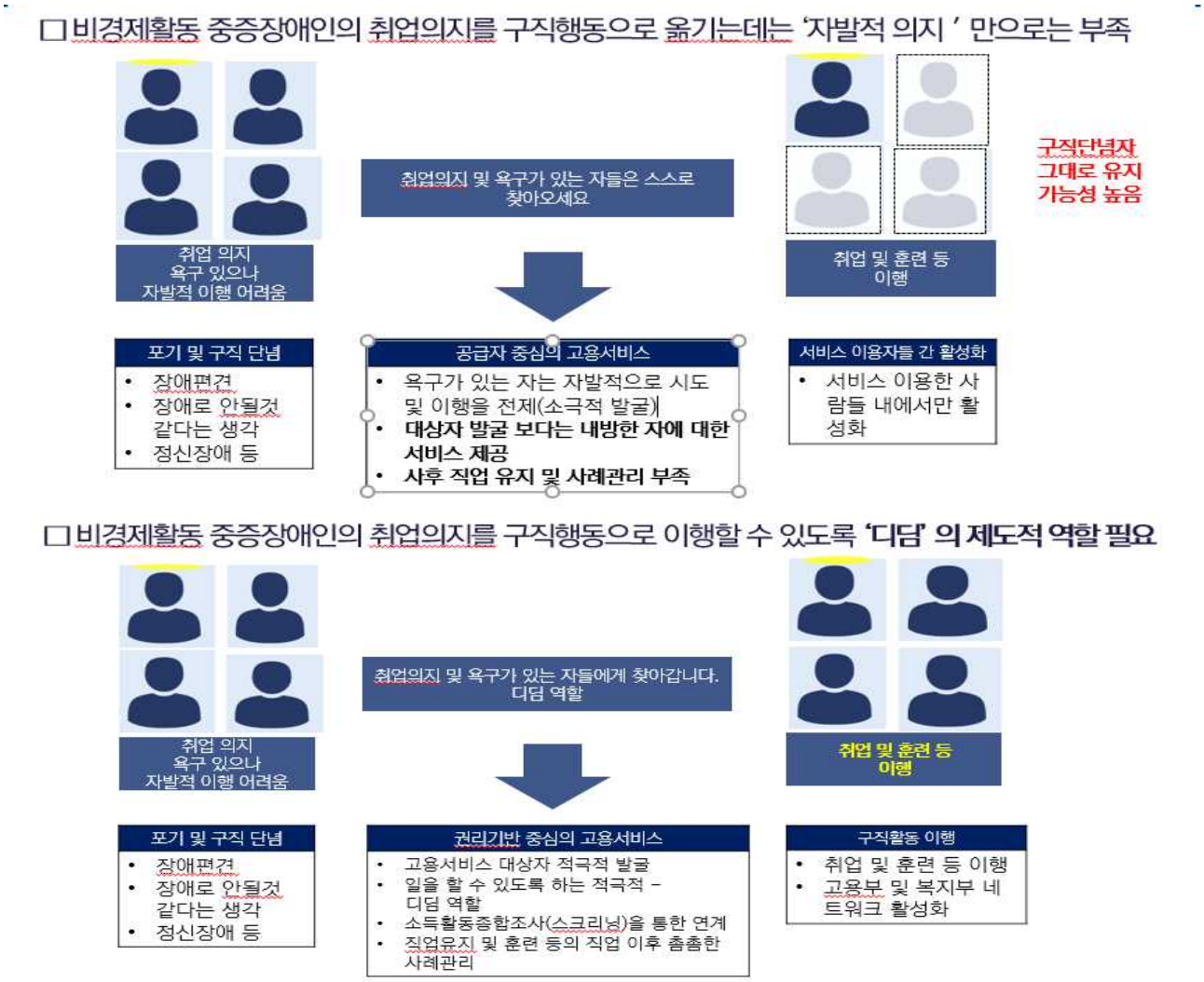
1 소득활동종합조사의 시범사업의 의미

○ **(디딤역할, 권리기반 중심의 서비스)** 자발적 의지만 있던 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구직활동 실행으로 옮기도록 하는 디딤 역할을 수행

- 특히 공급자 중심의 고용서비스 -> 권리기반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

〈표 9〉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 의미

공급자 중심의 고용서비스	권리기반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 소극적 발굴 - 자발적 이행 전제	· 적극적 발굴 – 지자체 발굴
· 서비스 이용자들 간 활성화	· 서비스 이용 경험 없는 자들의 유입
· 사후 직업 유지 및 사례 관리 부족 : 소득창출 및 직업유지 등에 무관심	· 사후 직업 유지 및 훈련 등 촘촘한 사례 관리 : 지속적 소득창출 등 지원



[그림 5] 소득활동종합조사 역할

○ **(서비스 연계 효율성)** 시범사업을 통해 정보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구직단념을 하였던 중증장애인들에게 초기 사정을 통해 두 기관으로 연결함으로써, 대상자들이 불충분하고 부정확한 정보의 접근 등을 막음

○ **(구직단념자 재도전 및 생애최초 노동시장으로의 유입)** 구직단념자들을 구직활동으로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구직단념자들의 재도전과 역량 확대에 기여

○ **(취업 및 훈련 등을 통한 총소득의 증가)** 과거의 공적이전에 의한 소득유지에서 훈련 및 취업 등에 의한 **가처분 소득 증가에 따른 중증장애인가구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



[그림 6] 소득활동종합조사 의미

○ **(고용서비스 지원기관 간 소통의 증가)** 분절된 서비스 연계에서 기관 들관 소통 확대

2 시범사업의 성과

〈표 9〉 시범사업 성과

서비스 이용자 입장	서비스 제공자 입장
· 이용 가능한 서비스 정보 획득	· 새로운 사례 발굴 기회
· 구직단념자의 중증장애인 사회참여 동기 유발 및 경제활동 참여 기회 확대	· 기존 사례 환기 기회
· 찾아오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과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기대	· 취업 서비스 정보 전달 기회
· 취업 의지를 가진 중증장애인에게 노동시장 유인 효과	· 취업 외 지역사회 기타 서비스 전달 기회
· 기존 서비스 대기자 취업 연계 확률 향상	· 유관 기관간 서비스 연계 기회(부처간 네트워크, 데이터 공유)
· 취업성공자의 소득 창출 효과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지자체 공무원의 인식 재고

3 시범사업의 한계점

〈표 9〉 시범사업 한계점

서비스 이용자 입장	서비스 제공자 입장
· 접수-조사-기관 연계-서비스제공까지 대기 시간 지연	· 사업에 대한 사전 교육 및 홍보 부족
· 연계 서비스 종류의 다양성 부족	· 참여자 모집 어려움
· 접수, 조사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 연계 서비스 종류의 제한성
· 기관별 중복된 조사 실시	· 조사결과 고용공단으로 사례 쏠림, 재연계
· 서비스 공급자 중심 서비스 연계 불만	·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의 사업 이해 및 서비스 관련 정보 부족
· 욕구에 맞지 않은 서비스 연계로 다른 기관으로 재이관 될 경우 만족도 저하	· 조사 도구에 대한 충분한 이해 부족
· 연계 서비스 기관의 거리(접근성) 문제	· 조사 지표 문항 중 장애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문항
	· 조사 도구가 근로능력 판단 보다 취업 욕구 중심으로 설계
	· 통합 전산시스템 부재
	· 부처간 유사 서비스 지원 수준 차이

4 개선방안

○ 이용자 중심 선택 가능성 확대 필요

○ 연계 가능한 서비스 기관 확대: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타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등

○ 연계 가능한 서비스 종류 확대: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훈련, 취업연계, 창업지원, 취업 후 적응 지원

○ 조사 도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발 고용서비스 다양성 검사 활용 가능성 중복되는 문항인 경우 통일

○ 사업 참여기관 대상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서비스 관련 정보 이해 교육 필요

○ 사업이 발굴과 서비스 연계를 넘어 취업 및 취업 후 적응지원까지 지원하는 촘촘한 직업재활서비스

○ 국기초 유예 등 지원 필요 : 장애정도에 따른 근로소득공제 차등율 적용 제안

5 정책방향 : 권리기반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 사례 발굴: 지자체 적극적 발굴 필요, 커리어플러스 센터, 주민센터, 행복e음센터, 연금공단, 일자리사업 등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활용 발굴, 인적 투입을 통한 적극적 발굴

○ 조사 및 평가, 사례관리: 주민센터에 전문가 배치 및 직업평가센터 및 장애인복지관,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 기관의 전문성 활용(장애인재활상담사, 직업능력평가사 투입)

○ 조사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서비스 다양성 검사와 연계 활용 방안 고려

○ 사례관리 기관: 직업평가센터 확대,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중 선별

○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이해, 유사 서비스의 부처간 지원 내용4 및 지원 수준 동일화, 서비스 질 향상, 경제활동 기초생활대상자의 지위 유지 관련 제도 개선

○ 서비스 기관 및 부처 네트워크 활성화: 범부처 통합정보시스템 활용성 제고(행안부, 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붙임 1 〔가칭〕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표 개괄

□ 조사지표

○ 기초영역

영역	세부지표	예	아니오
기초 일상생활 영역	장애인 당사자는 일상생활 시 호흡기 보조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①	②
	장애인 당사자는 배변 및 배뇨 시 타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단, 매일,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한정함)	①	②
	장애인 당사자는 음식물 섭취 시 타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예. 삽관, 유동식 제조 필요 등)	①	②
	장애인 당사자는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렵습니까?	①	②
	장애인 당사자는 도전적 행동과 공격적 행동의 반도가 잦거나 정도가 지나쳐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①	②

소득 활동 욕구영역	세부지표	취업	훈련 후 취업	훈련만 원함	모두 희망하지 않음
	장애인 당사자는 취업 및 훈련(교육 포함) 중 무엇을 더 원합니까?				
	취업 및 훈련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신체·감각 영역

영역	세부지표	수행 불가능	소극적 수행	적극적 수행	독립적 수행
신체·감각 영역	손목 및 손가락 움직이기	①	②	③	④
	팔 뻗고 굽히기	①	②	③	④
	서고 앉기	①	②	③	④
	평지 및 계단이동	①	②	③	④
	물건 들고 옮기기	①	②	③	④
	체력	①	②	③	④
	사물 구별 및 분류	①	②	③	④
	환경자극의 반응	①	②	③	④
	청각 및 평형기능	①	②	③	④

○ 인지·정서 영역

영역	세부지표	수행 불가능	소극적 수행	적극적 수행	독립적 수행
인지·정서 영역	시간관리	①	②	③	④
	자기관리	①	②	③	④
	대화하기	①	②	③	④
	감정조절	①	②	③	④
	위기대처	①	②	③	④
	공간지각력	①	②	③	④
	순차적 과업완수	①	②	③	④
	주의집중력	①	②	③	④
	기초학습능력	①	②	③	④

○ 개인·환경 영역

영역	세부지표	민간일자리(4시간 이상)에 부정적 영향을 줌	민간일자리(4시간 이상)에 영향을 주지 않음
개인 영역	근로경험		
	취업 의지		
	입퇴원 정도		
	약물부작용 수준		
	나이		
환경적 영역	지역사회 내 일자리(4시간 이상 민간일자리) 충분성		
	지역사회 내 고용서비스 충분성		
	대중교통 및 이동수단의 여건		
	근로관련 인적 및 물적 지원 정도		

< 참고: 소득활동종합조사 체계 >

의학적 영역	기능적 영역	개인 및 환경적 영역
- 소득활동에 영향을 주는 장애 손상 정도 및 일상생활 어려움 정도 - (조사기준) 기초 일상생활능력 및 소득활동욕구여부(취업 및 훈련 욕구 여부) • 기초영역 스크리닝 실시	- 소득활동에 영향을 주는 기능적 능력 - (조사기준) • 신체·감각: 9개 문항 • 인지·정서: 9개 문항	- 소득활동에 영향을 주는 개인 및 환경적 수준 - (조사기준) 개인 및 환경적 맥락이 소득활동에 영향(민간일자리 4시간 이상 기준)을 주는지 판단 •(개인) 근로경험, 취업의지, 입퇴원정도, 약물부작용, 나이 등 •(환경)지역사회 일자리 및 고용서비스 충분성, 대중교통 및 이동수단 여건, 근로관련 인적 및 물적 지원 정도

↓

기초조사	심층조사	
정량조사	정량 및 정성조사	
(1단계) 기초영역 스크리닝 실시	(2단계) 심층조사	(3단계) 심층조사 내 재량권
① (기초) 일상생활능력낮음+ 소득활동욕구 없음 • 심층조사 제외 • 기초조사영역이 1개 이상 경우 + 소득활동 욕구 없음 • 시범사업 정보 제공 및 필요시 주민센터 연계 ② (기초)일상생활능력낮음 + 소득활동욕구 있음 • 심층조사 실시 • 기초조사영역이 1개 이상 제한될 경우 + 소득활동 욕구 있음 • 시범사업 정보 제공 또는 맞춤형 일자리 개발 ③ (기초)일상생활능력 있음 + 소득활동욕구 있음 • 심층조사 실시 • 기초조사영역이 해당없음(모두) + 소득활동 욕구 없음 ④ (기초)일상생활능력 있음 + 소득활동욕구 없음 • 당사자 욕구에 기반하여 심층조사 판단 • 기초조사영역이 해당없음(모두) + 소득활동 욕구 없음 • 시범사업 정보제공	- 소득활동종합수준에 따른 '신체 및 감각, 인지 및 정서영역 총점' • 소득활동능력이 높은 집단 ☞ 고용노동부(취업성공패키지 등) • 소득활동능력이 낮은 집단 ☞ 보건복지부(현장중심일자리등)	- 재량권 구간: 현장전문가(노동시장 전문가 및 활동지원 서비스 조사자)의 판단에 의해 고용부~복지부 집단으로 이동 가능(10%) ※총점이 높을수록 소득활동능력이 높은 집단임

붙임 2 구직단념자 현황

〈표 1〉 비경제활동 장애인 중 취업가능자와 구직단념자 비율

(단위: 명, %)

구분		장애의 정도가 심한 비경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비경활 장애인
비경활인구수		394,088	213,234
취업가능여부	지난주 취업희망여부 + 지난주 취업 가능한자	25,072 (100.0)	20,563 (100.0)
	구직단념자 (잠재적 대상자)	14,855 (59.2)	14,886 (72.4)

주: 2020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재분석(18-65세 미만 기준)

〈표 1〉 비경제활동 장애인 중 향후 취업 희망 여부와 1년 내 구직활동 유무 및 구직단념자 여부

(단위: 명, %)

구분		장애의 정도가 심한 비경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비경활 장애인
향후 취업 희망	향후 취업 희망	27,572 (8.0)	16,652 (10.1)
	향후 취업 비희망	318,866 (92.0)	144,149 (89.6)
1년 내 구직활동	구직활동 경험 있음	9,829 (2.5)	14,509 (7.0)
	구직활동 경험 없음	382,163 (97.5)	194,371 (93.1)

주: 2020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재분석(18-65세 미만 기준)

〈표 2〉 중증장애인 구직단념자 지역분포 및 시범사업 지역

(단위: 명, %)

구분		구직단념자	구직단념자 중 근로 가능 여부	
			근로가능	근로불가능
장애유형	서울특별시	1832 (12.3)	1636 (34.3)	196 (25.2)
	부산광역시	2088 (14.1)	1856 (27.8)	233 (16.8)
	대구광역시	871 (5.9)	871 (15.3)	0 (0)
	인천광역시	744 (5.0)	703 (7.6)	40 (5.7)
	광주광역시	419 (2.8)	419 (5.4)	0 (0)
	대전광역시	806 (5.4)	365 (4.3)	440 (40.9)
	울산광역시	637 (4.3)	636 (13.1)	0 (0)
	세종특별자치시	0 (0)	0 (0)	0 (0)
	경기도	2513 (16.9)	2295 (34.5)	218 (15.7)
	강원도	0 (0)	0 (0)	0 (0)
	충청북도	54 (.4)	54 (.6)	0 (0)
	충청남도	1400 (9.4)	1028 (17.6)	372 (53.4)
	전라북도	703 (4.7)	703 (14.1)	0 (0)
	전라남도	587 (4.0)	0 (0)	587 (42.2)
	경상북도	1174 (7.9)	1174 (12.7)	0 (0)
	경상남도	980 (6.6)	981 (11.8)	0 (0)
	제주특별시	47 (.3)	47 (.9)	0 (0)
	전체	14855 (100.0)	12768 (100.0)	2086 (100.0)

주: 2020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재분석(18-65세 미만 기준)

〈표 3〉 중증장애인 구직단념자 장애유형

(단위: 명, %)

구분		구직단념자	구직단년자 중 근로 가능 여부	
			근로가능	근로불가능
장애유형	지체장애	2397 (16.1)	2086 (22.5)	311 (22.4)
	뇌병변장애	2117 (14.3)	1472 (26.5)	645 (76.0)
	시각장애	300 (2.0)	300 (3.6)	0 (0)
	청각장애	751 (5.1)	751 (11.2)	0 (0)
	언어장애	52 (.4)	52 (.0)	0 (0)
	지적장애	5400 (36.3)	4554 (75.3)	846 (60.9)
	자폐성장애	507 (3.4)	507 (6.9)	0 (0)
	정신장애	2069 (13.9)	2068 (36.6)	0 (0)
	신장장애	875 (5.9)	627 (8.7)	248 (35.6)
	심장장애	48 (.3)	13 (.2)	36 (5.2)
	호흡기장애	138 (.9)	138 (1.5)	0 (0)
	간장애	0 (0)	0 (0)	0 (0)
	안면장애	40 (.3)	40 (.8)	0 (0)
	장루 및 요루장애	69 (.5)	69 (2.0)	0 (0)
	뇌전증장애	93 (.6)	93 (2.7)	0 (0)
	전체	14855 (100.0)	12770 (100.0)	2086 (100.0)

주: 2020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재분석(18-65세 미만 기준)

〈표 3〉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희망자 및 구직단념자 (지난 4주) 비구직 사유

(단위: 명, %)

구분	구직단념자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4,030 (13.6)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5,802 (19.5)
근처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3,008 (10.1)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585 (2.0)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	6 (.0)
이전에 찾아 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7,157 (24.1)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고용주가 채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5,574 (18.7)
구직(취업, 창업) 정보나 방법을 몰라서	1,792 (6.0)
자영업을 하려고 하지만 창업할 능력, 상황이 안되어서	5 (.0)
육아 또는 가사로 인해	0 (0)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0 (0)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	0 (0)
장애 이외의 질병이나 사고로(건강문제)	0 (0)
취업/창업을 준비 중이어서	0 (0)
일을 하게 되면 기초수급자격이 박탈될 것을 우려해	1787 (6.0)
취업 이외의 활동 때문에(진학, 결혼 등)	0 (0)
기타	0 (0)
전체	29,740 (100.0)

주: 2020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재분석(18-65세 미만 기준)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모니터링 연구

발 행 일: 2022년 12월
발 행 인: 원장
발 행 처: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5층
Tel. 02-3433-0600
Fax. 02-3433-9567
http://www.koddi.or.kr
편집·인쇄: 누보

ISBN 978-89-6921-009-8(93330)

※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무단 복사하는 것을 금합니다.